

200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변경안

의안 번호	229
----------	-----

제출년월일: 2001.10. 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1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2. 주 요 골 자

2001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변경안은 취득 2건으로서 토지매입 2건, 4필지, 4,236㎡, 80,178 천원과 건물 신축 1건, 4동, 826㎡, 112,391 천원입니다.

가. 미탄궁도장 인접 토지매입 (문화관광과)

2000년 완공한 미탄궁도장(청옥정)의 부지 형태상 과녁을 2개 밖에 설치할 수 없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정규대회 개최가 어려운 실정인바, 과녁 인접 토지인 창리 505번 지 873㎡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나.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환경복지과)

대화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며,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와

위생매립장 운영 및 관리협약서에 따라 5개 마을에 (대화2,5,8,10, 하안미1) 마을별 2억원씩 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된 4개 마을에 (대화2리는 미확정) 마을회관 겸 경로당 4동을 (건물 4동, 826㎡, 과세표준액 112,391 천원) 신축하고자 하며, 건물 신축부지 3필지, 3,363㎡, 78,074천원을 매입 하고자 합니다. (하안미1리는 공유지에 건축 계획임)

3. 관계법규 및 지침(발췌)

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나.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총괄표 (7-1)

회계명: 일반회계 (군의회 의결대상)

(단위: m², 천원)

구분	합계			당초			변경계획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합계	토지	12	251,195	553,177	10	246,959	472,999	2	4,236	80,178
		건물	10	4,882	2,312,951	9	4,056	4,200,560	1	826	112,391
		기타									
	매입	토지	10	225,523	279,478	8	221,287	199,300	2	4,236	80,178
		건물									
		기타									
	교환	토지	2	25,672	273,699	2	25,672	273,699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10	4,882	2,312,951	9	4,056	2,200,560	1	826	112,391	
	기타										
처분	합계	토지	2	27,242	277,088	2	27,242	277,088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2	27,242	277,088	2	27,242	277,088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1년도 취득재산 목록(7-2)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m², 천원)

번호	재 산 의 표 시			취득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유자
	지목	소 재 지	수량				
합계	토지	2 건, 4 필지	4,236	80,178			
	건물	1 건, 4 동	826.4	112,391			
1	전	미탄면 창리 505	873	2,104	하반기	미탄중도장 부지	임 옥 랑 외6
2	토지	3 필지	3,363	78,074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마을회관 겸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 등)	
	건물	4 동	826.4	112,391			
-1	대	대화5리 1954-7	659	29,655	2001	“	농,진,공
	시,벽,	“	264.5	35,972			신 축
-2	전	대화8리 689-5	990	1,455	2001	“	전병옥
	시,벽,	“	165.3	22,481			신 축
-3	답	대화10리 455	1,714	46,964	2001	“	한상익
	시,벽,	“	198.3	26,969			신 축
-4	임	하안미1리 1111	(813)	0	2001	“	(군유지)
	시,벽,	“	198.3	26,969			신 축

※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임

관 계 법 규 (발취)

지 방 재 정 법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제8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시군의 경우 1억원이상)---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취득의 경우 1건당 (1,000m' 이상)---.“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균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4. 재산의 취득기준

가. 2001년도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 중요재산이 대상이 된다.

○ 매입, 기부채납, 신축, 증축, 양여취득, 교환, 무상귀속 등